

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(제12조 관련)

1. 보행자전용길의 노선 및 구조

- 가.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하는 경우 보전해야 하는 생태·문화·산림 자원 등이 분포하는 구역은 노선을 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하며, 가능하면 우회하는 노선으로 계획하여야 한다.
- 나. 보행자전용길 조성에 따른 주변 지형의 변형으로 낙석,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2. 시설기준

가. 보행자전용길의 유효폭

- 1) 보행자전용길의 유효폭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.
- 2) 유효폭 확보를 위해 조명, 안내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·관리하여야 하며, 보행자전용길의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.

나. 포장

- 1) 일반 보행자뿐만 아니라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, 해당 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디자인(유색 포장 포함)과 생태계를 배려한 투수성(透水性) 포장 등을 도입할 수 있다. 다만, 투수성 포장이 아닐 경우 배수 구조물의 설치, 배수를 위한 적절한 경사의 확보 등을 통해 물이 고이지 않는 쾌적한 보행환경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2) 보행자전용길과 다른 도로(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,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등)가 연계되는 구간 등은 포장의 유형과 종류를 다르게 하여 공간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야 하며, 투수성 포장 등을 도입할 수 있다.
- 3) 포장 재료를 선택할 때 주변에 생태 서식지나 주거지가 인접할 경우에는 포장 재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, 포장은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.

다. 안내시설

- 1) 해당 보행자전용길의 특성에 맞는 상징이나 색채, 문양 등을 도안하여 모든 안내시설 및 편의시설에 통일성 있게 사용하고,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.
- 2) 이정표, 안내표지판 등 모든 안내시설은 주변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하며, 우측보행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3.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

- 가. 보행자전용길에는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, 주변의 교통수단, 600미터 이내의 주

요 시설물, 1.2킬로미터 이내의 여객시설(여객자동차터미널, 철도·환승·공항·항만 시설 등), 그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려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나.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보행자전용길 안의 주요 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, 밤에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.

다. 보행자안내표지판에 포함되는 지도에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한다.

라. 보행자안내표지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할 수 있다.